

기획논단

1950년대 퀴어 장과 법적 규제의 접속

: 「병역법」·「경범죄법」을 통한 섹슈얼리티의 통제

허 윤*

국문초록

본고는 1950년대 「병역법」과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퀴어 장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위반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장남자나 남장여자, 동성애자 등 퀴어에 대한 언론보도와 대중서사적 재현을 통해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법적 통치성을 확인하고, 이를 규제와 일탈의 길항관계로 읽는 것이다.

반공 남한에서 국민개병제를 기본으로 하는 병역법은 불심검문을 통해 여장남자들을 구속하였다. 이러한 병역법은 실상 정치적 목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남성 청년 일반의 자유를 통제하였다. 이는 결국 청년을 잠재적 위반자이자 범죄자로 상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공안과 사회윤리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경범죄법 역시 여장남자들을 규제하였다. 1950년대 경범죄법에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경범죄법은 ‘탕아들’과 여장남자, 동성애자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이는 퀴어한 자들이 사회윤리와 충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위반자의 존재는 사회와 불화하며,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치안이 아닌 ‘정치’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병역법이나 경범죄법이 성소수자를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사이의 친밀성은 그 문화적 재현에서부터 실제 형성에 이르기까지 남성 동성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상황이었다. 이는 여성 동성애는 공안과 사회윤리를 위협하지

* 許允: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식민지 시기 이래 195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여성 동성애는 공통감각으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병역법이나 경범죄법의 강화와 더불어 점차 보수화되고, 이성애정상성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색인어: 여장남자, 남장여자, 경범죄법, 병역법, 동성애

I. 퀴어를 역사화하기

‘퀴어’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쉽지 않다.¹⁾ 우선 신문이나 잡지 등에 남아 있는 기록들은 ‘퀴어’를 사건화, 범죄화한다. 이로써 현재 접할 수 있는 기록의 상당수는 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들이나 스캔들이다. 과거의 자료에서 퀴어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은 사건 ‘덱택’이기도 하다. 위반과 일탈의 흔적을 통해 역사를 재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법자나 위반자를 통해 퀴어 장을 살펴보는 것은 섹슈얼리티와 규제의 계보를 살피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담론 장의 언어를 과거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성 전환’은 보통 수술을 통해 양성이나 간성을 한 쪽 성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1950년대 신문이나 잡지는 수술 없이 성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다룬다. 잡지 『희망』은 한국 최초의 성 전환자라며 의학적 처치 없이 성이 전환된 소년의 사례를 전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고열에 시달린 끝에 깨어나보니 남성이 되었다는 것이다.²⁾ 이밖에도 “양성”으로 태어났으나 후에 남자의 성기가 약화되어 여성이 된 사례³⁾나 군대에 있던 도중 생리적인

1) 본 논문은 2015년 12월 4일 한양대에서 개최된 <성(聖/性)스러운 국민: 국가, 법, 젠더/섹슈얼리티(Sexuality)>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1950년대 퀴어 장의 변동: 여성혐오의 전이와 동성애의 범죄화」를 수정한 것이다. 발표문 상태의 초고를 읽고, 퀴어 개념의 역사성을 세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준 토론자 김대현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김일란 역시 이러한 방식의 분석이 “당시 성소수자들의 삶의 맥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한계는 본 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본사독점탐방, “여자가 남자로 바뀐 진상과 그 후 소식, 경이 한국판 성의 전환”, 『희망』, 1954.3, 126-129면. 박정숙이라는 여학생이던 그는 5년 전인 초등학교 6학년 때 42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다 깨어나 보니 남성이 되었다고 증언한다. 이후 호적을 정정하고 박원길로 이름을 바꿨다. 남자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이러한 ‘전환’은 주민등록제도가 발효되기 전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3) 남녀의 성기를 갖고 여장을 한 최길모는 약 5년 전부터 남자의 성기 기능이 약해지고 여자의

변화로 여성으로 판정, 제대한 사례⁴⁾ 등은 성 전환을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가사의한 일’로 묘사한다.

때로는 성 전환이 동성애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자신은 준수한 남성에게만 매력을 느낀다며 한국에서도 성 전환이 가능하다는 물음에 전문가는 동성애를 “변태성”으로 명명하며 정신적,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⁵⁾ 이는 ‘전문가’도 동성애와 성 전환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 정체성과 성적 행위로서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이 혼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용되는 언어의 충돌로 인해 현재의 눈으로 1950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와 같이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주변화되어 있거나 비체화되어 있는 성적 주체들을 통칭하는 ‘퀴어’가 1950년대를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⁶⁾

본고는 남장여자, 여장남자, 동성애자 등 ‘퀴어’한 사람들의 위반을 통해 규제를 재사유화하려고 시도한다. 사회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제와 규범화를 통해 국민을 만들어낸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는 인구에 대한 직접적 통제와 연결되며, 법적 규제와 같은 제도화는 국민 만들기 과정과 직결된다. 이는 1950년대 공론장에서 성적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발현된다. ‘양공주’, 자유부인, 유엔마담 등 여성들의 몸과 그 실천은 다각도에서 문제시되었다. 미군 기지가 확장에 따라 늘어난 ‘양공주’, 경제력의 확보로 인해 증가한 자유부인 등 여성들이 경제, 소비주체로 부상하게 되자 여성성은 자유와 방종의 상징으로 교화의 대상이 되었다. 전통적 부덕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하는 1950년대의 풍기 단속은 사실상 주체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퀴어한 사람들 역시 풍기 단속의 대상이 되고, 법적 규제와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길항과정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언론에 보도된 성소수자들의 사례를

성기는 제대로 활동하게 되므로 남장을 하고 무당 노릇을 하며 생활해왔다. 가을에 동리남자와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남자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성 갓추어 화제”, 「동아일보」 1960.10.22.

4) 1년 전부터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켜 여자로 변해, 진상 조사 끝 군이 제대시켰다. 유방이 생기고 엉덩이도 커지고 성격도 여자같이 변하여 놀림감이 되다시피하다 월경도 있게 되어 여자로 판정, 제대하게 되었다. “군인이 여자로 변화”, 「동아일보」 1959.8.3.

5) “한국서 성전환은 가능?”, 「동아일보」 1955.1.23.

6) 박이은실, “퀴어”, 『페미니즘의 개념들』, 동녘, 2015, 388-423면.

중심으로 기사화되는 방식을 분석하거나 남성성과 여성성의 수행 방식을 역사적으로 재고하여 성소수자의 계보를 밝히고, 그 흔적을 복기하였다.⁷⁾ 본고는 이러한 계보를 바탕으로 법적 규제의 효과가 만들어낸 섹슈얼리티와 법의 관계에 주목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국가만들기의 과정에서 병역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역할을 검토하고, 반공 남한이 법을 통해 '비정상인'을 속아내는 장면을 분석할 것이다.

II. 치안국가 남한과 성적 자유에 대한 법적 규제

해방 후 남한 사회는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행정부는 군인과 경찰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았다. 여순사건 진압을 계기로, 보도연맹, 제주 43 사건에 이르기까지 군인, 경찰, 반공청년단 등은 '공안'이라는 명목으로 압도적인 폭력을 행사해왔다. 랑시에르는 사회 안에 자리와 위계를 분배하고 그에 따라 자격과 권리를 할당하여 주어진 권리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즉 어떤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분할하고 그 분할을 유지하는 것을 '치안'(police)이라고 정의한다. 치안은 주어진 사회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 활동일 뿐이며, 그것을 위해 이미 특정한 양상으로 분배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1950년대 남한 사회는 남한과 북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반공과 빨갱이의 분할을 강화하고 반공이라는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치안 국가였다고 말할 수 있다. 분할선 바깥의 몫없는 자들인 비국민, 비시민들은 통치 테크놀로지에 의해 치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⁸⁾ 반면 정치는 몫이 없는 자가 자기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것이고, 권리 없는 자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는 치안이 분할한 감각을 넘어서 '치안'을 탈구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랑시에르는 이를 '불화'라고 부른다. 정치는 일치를 넘어서 불일치의 분배 활동이라는 것이다.⁹⁾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950년대 켜어 장은 치안 국가에

7) 김일란, “다른 세상 읽기-1960년대의 여장남자와 남장여자”,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 사람생각, 2008; 터울, “50-60년대 언론에 소개된 동성애”, 『친구사이 소식지』 57호, 2015.3.31.; 터울, “50-60년대 언론에 소개된 트랜스젠더, 간성, 남장여자/여장남자”, 『친구사이 소식지』 59호, 2015.5.29. 이 글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8) 자크 랑시에르(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133-138면.

9) 자크 랑시에르(진태원 옮김), 『불화』, 길, 2015.

서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했다. 본 장에서는 「병역법」과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퀴어 장과의 ‘불화’를 밝히고, 이러한 불화가 젠더 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병역법의 강화와 청년의 잠재적 범죄자화

처음 병역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남한은 지원병제를 채택하였다. 제1공화국은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 1948.11.30.)과 「국방부직제령」(대통령령 제37호, 1948.12.7.) 등 국방관계 법령을 제정하여 지원병제도를 채택하였다. 부족한 정교군을 보충하기 위해 「호국군 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대통령령 제52호, 1949.1.20.)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병제도는 1949년 8월 6일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의무병제를 채택함으로써 폐지된다.

1950년대는 「병역법」(법률 제41호, 1949.8.6.)이 시행, 확산된 시대이다. 총칙 1조 “대한민국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의무를 진다.”는 「병역법」은 남성 일반에 대한 인구 관리를 의미했다.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군인이 될 몸으로 호명당했다. 이는 총칙 2조 “대한민국국민된 여자 및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하지 않는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복할 수 있다.”와 결합되어 완성된다.

그러나 개병제를 채택한 후에도 미군정의 경비대 정원 통제와 재정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개병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보류하고 있던 남한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1950년 8월 22일 강제징집에 착수하였다.¹⁰⁾ 그 결과 남한 군대는 10만에서 65만으로 확대되었으며, 거대한 육군은 남성 신병들로 채워졌다. 이 과정에서 징집을 위한 남성 대중 동원은 국가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과제였다. 전쟁 중 계속된 징집을 피하기 위해 남성들은 호적을 위조하여 나이를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제대증, 신분증 등을 가지고 다녔다. 대학진학생의 60%가 군대 기피자라든가, 미군의 일을 도와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공론장에 유통된 것은,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1950년대 남성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국가는 군인이 되지 않는 청년들을 이기주의자로 형상화하는 것으로 대응한다.¹¹⁾ 군인을 중심으로 남성들을 위계화하고 남성

¹⁰⁾ 나태중,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과정 연구”, 「군사」 84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297-322면.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진짜 사나이’ 담론을 만든 것이다.¹²⁾

제일 영광스러운 죽음은 나라에 일이 있을 때에 군인이 되어 전쟁에 나아가 순국하는 죽음일 것이다. (중략) 다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비록 그 몸이 죽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죽을 자리에서 (중략) 겨우 생명을 보존한 상이군인들이니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¹³⁾

대통령 이승만은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과 상이용사를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칭송한다. 하지만 이 위계화를 따를수록 남성은 죽거나 장애를 입고, 자신의 남성성을 훼손당한다는 모순이 생겨난다. 1950년대 내내 북진통일을 강조하는 국가의 목소리는 계속되었고, 곧 전쟁이 발발한다는 두려움이 항존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는 병역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병역법 강화를 골조로 한 1957년 개정을 가져온다.

1957년의 제2차 전부개정 「병역법」(법률 제444호, 1957.8.15.)은 병역 복무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총칙 1, 2, 6조이다. “제1조 본법은 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개병제도를 실시하여 국방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며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수 있다.”와 같이 남성의 병역 의무와 여성의 지원 가능성이 한 항목 안에서 기술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 병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1949년의 제정 「병역법」(법률 제41호)와 일부개정 「병역법」(법률 제203호, 1951.5.25.)에서는 “제6조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형된 자는 병역에 복할 수 없다”이던 것이 1957년 전면개정에서는 “제5조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다. 단, 6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라도 그

11) “개병주의를 강조”, 『동아일보』 1956.3.22.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나 당사자들은 병역에 불공평함이 없이 사를 버리고 개병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종용하는 한편 “대학기피자는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히 취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남성 전원을 군인으로 호명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이기주의자로 치부한다.

12) 문승숙(이현정 옮김),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토하나의문화, 2007, 71-102면.

13) 이승만, “상이군인 제대식에 보내는 치사”,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 공보처, 1953, 169면, 이임순, “상이군인, 국민만들기”, 『중앙사론』 33호,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1, 297면 재인용.

형을 마친 후 5년을 경과한 자는 병역에 복무하여야 한다.”로 바뀐다. 즉 과거에는 병역 대상자가 아니던 범법자일지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러한 총칙의 변화는 징집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징소집기피 혹은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¹⁴⁾ 병역기피자의 고용주에게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소집기피 관련자에게는 8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병역기피를 돕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항목이 세분화되고 강화되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소집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게 되었다.

1957년 병역법의 벌칙 항목의 강화는 병역법 위반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반증한다. 당시 호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자가 하루만에 100명에 달할 정도였고, 57년의 병역법 개정 이후 3년간 경북지구에서만 병역기피자를 5,600명을 고발하였다.¹⁵⁾ 따라서 징소집기피를 도운 자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병검사 기피자에게 징역형으로 형벌 수위를 높인 것은 개병제를 강력하게 실시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1950년대 병역법이 사회를 통제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불심검문이나 징병검사의 강화와 같은 병역법 단속 항목은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여타 이슈들에도 적용되었으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밀접한 감시를 정당화했다. 보안법 위반 투쟁을 전개하던 민주당 인사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검거되거나¹⁶⁾ 자유당의 선거당선을 위해 “경찰관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증거가

14) 「병역법」(법률 제444호, 1957.8.15.)은 제9장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모든 벌칙의 형량이 엄중해진 것은 물론이고, 새로이 신설된 항목들도 있다. “제102조(의무불이행자사용금지위반) 제9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병검사, 입영 또는 응소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그 사정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검열점호불참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66조(검열점호 ①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 및 귀후병으로서 소집중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교도, 사열, 점검을 위하여 연1회 집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일수는 3일내로 한다. 단, 장관급장교는 열외로 한다. ②근무 또는 연습소집 및 교육소집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해의 점호를 면제한다.)의 규정에 의한 점호를 받지 아니한 자는 천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등이 추가된 것이다.

15) “병역기피한 자 5,600명”, 「동아일보」 1960.4.2. 경북지구 병사구 사령부에서 약 2년간(1958년 1월부터 1960년 3월 현재까지) 도내 병역기피자 5651명을 집단 고발하였다.

16) “보안법 반대투쟁에 보복”, 「경향신문」 1958.12.29. 민주당 간부인 민의원 의원 이만우 씨 장남 이상만 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대학 재학 중 소집을 받고 훈련소에 갔다 신체 이상으로 귀향조치를 받았으며 그후 위암을 앓은 환자를 신체검사 미필을 이유로 긴급구속조치하였다.

잡히면 곤란하니 민간인과 1대1로 하되 ‘병역법 위반’, ‘밀주’, ‘도벌’, ‘도박’ 등 사소한 것이라도 입건 구속하겠다고 위협을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서장으로 부터 내려왔다는 고백도 있었다.¹⁷⁾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지점이다. 일단 병역법이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사소한 법 위반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실제 집행과정에서 병역법은 ‘사소한 것’이어서 어디에든 활용될 수 있고, ‘국가를 방위한다’는 본래 목적에서 멀어져 다른 의도로 활용되었다. “병역 위반 사실의 증거를 완전히 얻지 못하면서도 위반자로 규정하여 경찰에 연행하는 사실이 허다”¹⁸⁾할 만큼 병역법은 국민을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병역법」의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은 ‘풍기문란’에 대한 공론장의 관심과 결합하여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로도 이어졌다. 1950년대 공론장은 ‘양공주’나 사창의 범람 등을 지적하면서 섹슈얼리티를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때 통일교 교주 문선명, 신앙촌의 박태선과 그 신도들에게도 병역법이 적용되었다. 문선명에게는 여신도들의 정조를 유린하였다는 풍문이 있었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고발, 구형의 근거가 되지는 못했다. 이를 대신해 문선명에게 부여된 죄목이 병역법 위반이었다.¹⁹⁾ 신앙촌 역시 사설 경비대까지 상주하는 ‘치외법권’의 상황에서 박태선과 신도들을 직접 고발하는 계기가 된 것은 병역기피와 간첩출몰에 대한 신고였다.²⁰⁾ 즉 병역법과 국가보안법에 근거하여 통일교나 신앙촌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외견상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여장남자들 역시 병역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 까페나 다방에서 여급으로 일하던 여장남자들은 불심검문에 걸리거나 손님들이 고발함에 따라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된다.²¹⁾ 소년

17) 「경찰의 선거간섭공작을 폭로」, 「동아일보」 1958.4.26. 4월 14일까지 현직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지서 주임 및 사찰계 형사가 재직 당시의 선거간섭공작을 폭로하였다.

18) “기피자단속 신중히 하라”, 「경향신문」 1958.1.19.

19) 이성재, “박인수 문선명 사건에 나타난 사회상”, 「경향신문」 1955.7.11. 이성재는 박인수와 문선명을 나란히 비교하면서, “국민사기를 순자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한다. 이후 문선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나이를 고친 것은 사실이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결이 났다.

20) “무법천지의 박태선 신앙촌”, 「경향신문」 1958.9.10.

21) 키가 오직 가량되는 큰 여자를 불심검문한 결과 남자로 판명되어 병역법 위반 및 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그는 20세 때부터 여장을 해왔고, 식모살이를 하던 중이었으며 이웃집의 노파는 수양딸로 삼고 있었다. “20세 때부터 여장한 남자 ‘파마’에 연지칠”, 「동아일보」 1957.10.9.; 김양수라는 24세 여장남자를 병역법과 경비법 위반 혐의로 유치장 구류 중. 「동아일

가장인 조영희는 아픈 부모를 대신하여 장남인 자신이 신문배달, 참기름 장사 등을 하여 생계를 책임지려고 했지만, 감당할 수 없어 여장을 하고 접대부로 일했다고 고백한다. 기자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조영희 군의 사건을 보도한다. 그러나 경찰서에 검거되어 삭발을 하고 쫓겨났지만 “그의 교태에는 기자의 마음도 의심할 정도의 음성이며 태도이며 표정 등이었다”는 등 여장남자의 여성성을 묘사하는 시선에는 호기심이 도드라진다.²²⁾ 여장남자와 관련된 기사에는 그녀가 얼마나 여자다운지를 증명하기 위해 외모나 태도에 대한 묘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여장남자의 사연은 선정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지면에 오르내린다. 게다가 조영희는 경찰서에서 빨갱이라는 혐의까지 썼다. 국민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자는 공산주의자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여장남자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신문지상에 최초로 보도된 것은 1950년이다. 이는 1949년 개병제로 전환한 지 얼마 안 되서 벌어진 일로, 남성 ‘일반’을 단속하는데 병역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병역법은 사실상 청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좌익 행위 경험자나 친일파가 아니더라도 공민증이나 제대증이 없는 청년은 언제든지 기피자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 배급과 선거를 위해 필요했던 신분증은 결국 국민 통제에 중요한 수단으로 변했다. 공민증, 양민증, 군 발행 특별 통행증, 도민증, 학생증 등을 소지해야만 외출이 가능했다. 경찰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치안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불심검문을 수행할 수 있었고, 야간 통행금지를 통해 개인의 생활반경을 통제했다. 즉 가시화된 퀴어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에게도 감시의 눈이 상시화된 것이다. 이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형성된 치안국가 남한의 통치성이 개인의 일상생활을 통제한 결과이다.

2. 경범법의 제정과 사회윤리의 법제화

「병역법」과 더불어 퀴어 인구에 대한 통제에 주로 쓰인 법률은 「경범죄처벌법」(이하 「경범법」, 1954년 4월 1일 법률 제316호)이다. 「경범법」은 형법에 규정된

보」 1957.10.15.; 성동서에서는 김선희라는 여자를 사칭하는 23세의 청년이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 어릴 때부터 신체발육이 보통 남자와 달라 약간 “불구자 같은 인상”을 주었다. “여장남자가 접대부 노릇, 기피자로 구속”, 「동아일보」 1959.8.13. 등.

²²⁾ “여장남자 조군의 전일담 1~2”, 「경향신문」 1950.2.7~8.

범죄와 같이 사회윤리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나 “공안 또는 사회윤리의 입장에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비교적 경미한 행위를 거의 포괄적으로 규정한 형사법칙”이다.²³⁾ 일제시대의 잔존물인 경찰범처벌규칙을 폐기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공중도덕”을 위해 도입되었으나²⁴⁾ 사실상 경범법의 세부 조항은 경찰범처벌규칙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²⁵⁾ 이는 경범법이 국민 생활에 대한 전면적 감시와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45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관 또는 검제관의 지문채취에 응하지 아니한 자”라는 항목이 포함됨으로써 불심검문을 정당화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도입된 지 40일만에 4,000여 건이 적발되었으며²⁶⁾, 1956년에는 지방선거에 악용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²⁷⁾ 이는 「경범법」이 그 적용 범위와 대상에 있어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범법이 근거로 삼는 공안과 사회윤리는 치안과 즉결된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 뒤흔든 구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행위가 사회윤리와 공안을 위협하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만난다. 이때 불안, 혐오 등의 감정적 판단이 법의 제정과 집행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성적 자유와 법의 관계를 논의한 마사 누스바움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혐오감, 불안 등의 강한 감정을 법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수가 불쾌감이나 도덕적 이유가 있는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23) 박정근, “경범죄처벌법해설”, 「법정논총」 15호, 1962.12, 35-56면.

24) “경범법 실시에 제하여”, 「경향신문」 1954.4.22. “미군정이 한국민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일제시대의 악법은 폐지한다는 군정법령이 내린 후로 경찰범처벌규칙도 유아무야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도의나 공중도덕이 그런 종류의 처벌법이 필요없게끔 규정되었거나 발달하였다는 현실적 증거는 없었고 도리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이 지켜야 할 공중도덕이란 퇴폐할 대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자인해야 할 것이다.”

25) 「경찰범처벌규칙」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하지 않는 저택, 건축물, 선박에 숨어든 자(제1호), 일정한 주거지나 생업이 없이 배회하는 자(제2호), 구걸을 강요하거나 구걸을 시키는 자(제7호), 단체가입을 강요하는 자(제8호), 다른 사람의 사업이나 사적인 일에 관해 출판물을 게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거나, 신문잡지 기타 출판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게재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금품을 받고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꾀하려는 자(제13호), 과대 허위광고를 하여 부당한 이익을 꾀하는 자(제16호), 많은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옷통을 벗거나 나체로 다니는 자 또는 둔부나 넓적다리를 노출하거나 기타 추태를 부리는 자(제56호), 노상방뇨를 하거나 하게 하는 자(제57호) 사람의 사체나 죽은 태아를 은닉하거나 다른 물건과 뒤섞어 위장하는 자(제75호) 등이 있다. 이는 현행 한국의 「경범죄처벌법」(2007.5.17 개정)에서 정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이선엽, “경범죄처벌법의 역사적 변천”, 「한국행정사학지」 25호, 2009, 1-19면.

26) “쏟아지는 경범죄”, 「경향신문」 1954.6.5.

27) 민주당 인사나 운동원들에게 경범법 위반으로 구류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고발에 결국 선거기간 중 경범처벌을 금지하는 선거법 초안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20일동안에 3500건”, 「동아일보」 1956.7.27.; “선거기간 중 경범처벌을 금지”, 「경향신문」 1957.5.8.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누스바움은 성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면 서, 대중의 합의에 의해 개인의 사적 영역을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²⁸⁾ 이는 풍기단속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누스바움이 예로 든 미국의 소도미 법은 초기에는 재생산과 직결되지 않는 성행위를 불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이후 (특히 남성 간의) 동성애를 단속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는 동성애의 성적 자유를 억압해야 한다는 감정적 판단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범죄법」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드러난다.

경범죄법에 풍기단속이 명시된 것은 1973년의 2차 개정(「경범죄법」 일부개정 1973.2.8 법률 제2504호)이다. “44. 공중의 눈에 띄이는 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안까지 투시되는 옷을 착용하거나 또는 치부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 “49.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저속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자”, “50. 은밀한 장소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무도교습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장소를 제공한 자” 등 ‘퇴폐풍조’에 대한 항목이 추가된다.²⁹⁾ 이때 판단 기준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이다. 이러한 감정적 판단은 그러나 풍기문란을 명시하지 않은 1954년 법 아래에서도, 개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있는 여자와 여관에 투숙하거나 낮에 자신의 집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29일가량의 구류가 구형되었다.³⁰⁾ 이때 「경범죄법」(법률 제316호) 40조 “적, 주소, 성명, 연령, 직업 등을 사칭하고 투숙 또는 승선한 자”가 적용된다.³¹⁾ 이는 호적을 주소 등을 정리하고, 인구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러한 인구관리는 1949년 이승만 정권이 마을 단위의 보고 체계를 통해 ‘빨갱이’를 색출하고, 한국전쟁 시 징병제에 활용한 방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항목이 강화됨으로써 개인의 이주, 이동의 자유는 억압되고, 법적 혼인 이외의 관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이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28) 마사 누스바움(강동혁 옮김), 『혐오에서 인류애로』, 뿌리와이파리, 2015, 100-114면.

29) 이후 1988.12.31.의 일부개정 법률 제4041호에서 3, 44, 45조 항목, 즉 떠돌이, 장발자 및 저속 의상착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삭제되었다.

30) “서리맞는 탕아들”, 「경향신문」 1954.5.31.

31) 이 조항은 이후 법률 제3680호(전부개정 1983.12.30.)에서 “37. (성명 등의 허위 기재) 성명·주민 등록번호·본적·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으로 축소된다.

수 있게 된 것이다.

4년간 여장을 하다 경범죄로 구류 처분을 받은 문금성은 “수년동안 이 술집 저 술집에서 가진 교태를 부리며 못남자를 희롱하여 오던 파마 머리에 짙은 화장을 하고 양단저고리에 비로도 치마를 감은 미모의 매소부(賣笑婦)”로 “단정한 여장을 하고 여경들의 입회 하에 취조를 받았으며 수집은 듯 웅크리고 앉아 가느다란 여자의 음성을 내며 어디까지나 세련된 여자의 태도를 간직”한 것으로 그려진다. 그는 “가끔 여장을 하여 보면 여자로서의 실감이 올라나는 것 같고 잘난 남자를 보면 이상하게 그리운 생각이 들어요”라며 스스로를 ‘중성’으로 정의하는 등 앞으로도 여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다.³²⁾ 그가 정의한 ‘중성’은 주체가 규범을 탈구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젠더이다. 여장에 대한 규제가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강화하고, 규범을 생산한다면, 그 규제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규범을 개인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으로 ‘패싱’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소년의 경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생물학적 연결고리를 변용하여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교란하고, 남성성/들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었다.

이러한 지점에서 버틀러가 말하는 젠더 규범의 ‘박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버틀러는 젠더 규범이 항상 섹슈얼리티를 통제한다거나 섹슈얼리티의 규제는 젠더 규범의 일차적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규범과 규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박탈dispossession’이 젠더 구성의 토대라고 지적한다. 젠더 규범의 이상은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나타나는 데 형태와 과정을 제공하고, 이러한 박탈의 매트릭스 안에서 주체는 자신이 젠더를 소유하고 있다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주장을 재고하고, 스스로를 전치하면서 규범 장치를 재형상화하고 젠더 허물기를 수행하기 때문이다.³³⁾ 법을 위반한 여장남자들 역시 그러하다. 이들은 ‘불화’를 통해 쿼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성성으로 상정된 젠더 규범을 남성의 신체로 수행함으로써 규범 장치를 재형상화하는 것이다.

32) 「동아일보」 1956.11.10.; “경범죄법 위반 혐의로 유치장 구류 중”, 「동아일보」 1957.10.15.

33) Judith Butler, *Dispossession: The Performative in the Political*, Polity, 2013, pp.1-10, 44-63.

Ⅲ. 1950년대 퀴어의 문화적 재현과 이성애정상성의 강화

여장남자나 남장여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젠더 규범의 탈구축은 1950년대 문화 장의 공통감각이기도 하였다. ‘퀴어’한 사람들은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소화하는 창극인 여성국극은 젠더 교란이 널리 대중적인 지지를 받은 텍스트였다. 역사극 속 왕자님 역할을 위해 그/녀는 걸음걸이, 포옹하는 방법 등 남성의 코드를 익혔다. 칼싸움 연습에 매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연기하는 이몽룡이나 마의 태자는 남자보다 더 용맹하고 더 남자다웠다.³⁴⁾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 신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행(performance)에서 나온다는 여성국극의 설정은, 전쟁으로 훼손된 남성성을 과잉 수행을 통해 연출함으로써 젠더 규범을 의문시하는 장치가 된다.

여성국극이 인기를 끌고, 여장남자나 남장여자의 사건 기사들이 빈번하게 보도 되는 반면 동성애자에 대한 사건 기록은 신문지상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동성애를 일종의 ‘정신병’으로 사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⁵⁾ 반면 1950년대 신문연재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여성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자주 등장한다. ‘S언니’는 식민지 시기부터 공론장에 자주 등장해왔다. 소녀들 사이의 사랑은 이성애 관계로부터 소녀들을 ‘순결하게’ 지켜줄 수 있기에 용인되었다.³⁶⁾ 즉 여성들의 성적 행위는 사회적으로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전후 신문연재소설에서도 이어진다. 1953년 서울신문에 연재된 『녹색의 문』의 주인공 유보화는 여성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육체를 발견하고, 사랑과 질투를

34) 여성국극에 관한 연구는 김지혜, “1950년대 여성국극의 공연과 수용의 성별 정치학”, 『한국극예술연구』 30, 2009, 247-280면; “1950년대 여성국극공동체의 동성친밀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6(1), 2010, 97-126면 등 참조.

35) 1950년대 동성애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은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의학문답 코너에서 답변하는 경우 정도이다. 이 시기 동성애는 ‘정신병’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관해서는 터울, “시간 사이의 터울 #8: 성과학과 우생학- 제2의 성과 제3의 성”, 『친구사이 소식지』 69호, 2016.3.17. 참조.

36) 1920~30년대 한국에서 여성들 사이의 동성애는 남성과의 성 접촉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용인되기도 하였다. “여자들 사이에는 이 동성애가 있음으로 해서 정서의 애뜻한 발달을 재촉함이 되고 따라서 남녀 간의 풋사랑에 대한 유혹을 면함이 될 것”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동성연애’는 “이익은 있을지언정 해는 업슬 관계”로 옹호된 것이다(소춘, 『요대의 조선 신여자』, 『신여성』, 1923년 11월) 일본에서도 이와 같이 여성들 사이의 동성애가 여성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정서와 인격의 발달을 가져오고, 남학생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하는 등 이로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서, “언니 저 달나라로: 백합물과 1910~30년대 동북아시아 여학생 문화”, 『빠라』 1호, 2012, 142-164면.

학습한다.³⁷⁾ 물론 소설은 여성 동성애를 사춘기의 성적 실험 혹은 성장의 과정으로 재현한다. 이후 유보화는 이성애 단계로 진입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관계는 오히려 훼손된 남성성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다. 유보화와 남성들의 관계는 모두 비극으로 끝난다. 남편 이성배는 유보화를 강간했으며, 정서적으로 학대한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민족주의자 김영서는 도영혜를 간첩으로 고발하고, 그녀가 낳은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는 등 유보화를 실망시킨다. 이성애 관계는 실패하고, 여성들과의 관계가 전부였던 여학교 시절은 유보화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기억으로 기록된다. 이는 『녹색의 문』이 이성애정상성이라는 대질서와 교묘하게 충돌하는 지점을 노출한다.³⁸⁾

이러한 감각은 1950년대 중반까지도 유지된다. 1954년 10월 1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경향신문에 연재된 김내성의 『애인』은 “연애는 청춘의 심불”이며 “인생이 부닥치는 최초의 도장”이기에 “이 최초의 인생 도장을 더럽히지 말자”고 당부한다. 연애는 “한 번 빗맞으면 피를 보고 목숨을 건드리는 진검승부”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청년들의 풍기를 단속하고 연애의 정신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당대의 언설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반항하는 것이 ‘명동파’ 이석란이다. 이석란은 명랑하고 쾌활한 자신과 정반대인 이지적이고 “차가운” 채정주와 S언니-동생 사이이다. 이들은 여학교 시절부터 대학에 걸쳐 “열렬한 동성애 속에서 청춘의 일부를 불태워”왔다.³⁹⁾ 이때 동성애는 이성애와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사회는 여성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37) “난 너만 사랑함 고만야, 다른 앤 싫어. 너두 나만 사랑해 줘 응?”하고 유보화를 껴안아 주든지 유보화의 뺨을 자기 뺨에 갖다 대든지 하곤 했다. (최정희, 『녹색의 문/속 녹색의 문/끝없는 낭만』, 민중서관, 1976, 18면.)

겉 사람의 눈도 있고 해서 초저녁엔 으레 자리를 따로 깔아 놓긴 하나 겉 사람이 잠든 눈치면 그들은 언제나 한자리 속에서 잤다. 유보화보다 차순이가 여기엔 더 열심이었다.

차순은 도영혜 모양으로 꼭 껴안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뺨도 비벼 보고 입도 맞춰 보고 또 가슴도 주물러 보고 하는 것이었다. (최정희, 위의 책, 24-25면.)

그는 한 손을 그 봉긋한 한 쪽에 갖다 대어 보았다. 지난 밤 차순이가 주무르던 때와 같은 감촉이 손 끝을 통해 전신에 자릿하니 퍼졌다. 또 다른 한 손마저 남은 한 쪽 봉긋한 위에 갖다 대었다. 한 쪽에서보다 양쪽에서 오는 감촉은 더 한층 강렬했다. (최정희, 위의 책, 26면.)

38) 『녹색의 문』에 대한 분석은 졸고, “기억의 탈역사화와 사이의 정치학”, 『한국문화연구』 28호, 2015, 109-137면 참조.

39) 정주와 석란은 열렬한 동성애 속에서 청춘의 일부를 불태워온 것이다. 그들에게는 남성의 애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돌이는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었다.

“그렇지만 태양 앞의 달빛 모양, 동성애란 결국 이성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죠. 영원히 결혼하지 말자던 여학생 시절에의 아름다운 추억만이 폐허 위에 외로이 남은 한기둥 이끼 낀 석탑처럼……” 김내성, 『애인』전편, 삼중당, 1957, 78-79면.

‘동성애’라고 명명하면서도, 이를 위험한 것으로 인지하지 않는다. 이석란이 도덕적 위기를 상징하는 전후파 여성이기는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자유연애와 댄스 등의 미국식 가치이지 S언니 때문은 아니다. 하지만 소설은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이석란을 반성하게 만들어 젠더 규범과의 통합을 모색한다.

전후 치안이 안정되면서, 사회의 성적 규범은 강화된다. 제헌 헌법(헌법 제1호, 1948년 7월 17일)은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보호를 명시한다.⁴⁰⁾ 이승만 정부는 도색잡지를 “민족문화발전의 일대암”⁴¹⁾으로 명명하는 등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를 담론화하였다. 병역법과 경범죄법의 제정비 역시 이러한 통제에 효과적으로 동원되었다. 이러한 성적 보수화는 퀴어 장에 대한 단속과도 통한다. 이러한 흐름이 대중문화 영역에서 반영된 것이 위와 같은 소설들이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절로 그려지던 여성 동성애가 “이끼 낀 석탑”이 되는 것은 이성애중심성이 강화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 영화 <질투>가 있다.

<질투>(1960.5.20. 개봉, 각본 박성호, 감독 한형모)는 여성동성애의 광기를 전면에 내세운다.⁴²⁾ “동성연애에 영크러지는 일대의 질투, 국제 무대에 파문을 던질 최고 이색편”(경향), “이성애의 공포가 동성애로 변한 것은 세계적 풍조일까?”(동아) 등의 광고문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영화는 전후 섹슈얼리티 문제를 동성애와 연결시킨다. 성적 트라우마를 가진 여성 동성애자가 치료되는 과정을 통해 이성애정상성의 이데올로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태극상사의 사장 최재수의 동생 최재순(문정숙 역)은 전쟁 중 성폭행을 당해 남성을 혐오하는 ‘병’에 걸린다. 남성에 대한 증오와 공포로 정신분열을 일으킨 재순은 여학교 시절의 S 동생인 금이에게 집착한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금이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원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는 죽을 때까지 금이를 사랑해. 우리는 한 동기간보다 더 친밀해질 수 있어.” “난 금이가 필요해. 날 S언니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우리는 한 몸이야. 헤어질 수 없는 몸이야.” 라는 등 열렬한 사랑을 고백한다. 이러한 S언니의 사랑은 사랑 대상이 약혼자와 재회하여 결혼하려 할 때 광기로

40)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1) 부산시 광복동 K생, “도색잡지 일소책 없을까”, 「희망」 1952년 6월호, 72면.

42) <질투>는 필름이 남아 있지 않고, 시나리오만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영상자료원에 보관 중인 시나리오를 참조하였다.

돌변한다.

최재순은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하는 올케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여성이 남성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질문하거나 “신성한 결혼을 빙자로 자기 육체의 향락을 취하려는 그런 더러운 마음”이 남성들의 공통된 악의 심리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금이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여자를 노예취급하는 그런 남성들”과 결혼하게 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여성들이 가정 안에 머무르는 것을 노예화라고 보는 최재순의 태도는 한국 가부장제의 현실을 고발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영화는 그녀의 광기를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약화시킨다. 게다가 최재순의 ‘너그러운’ 오빠는 그녀의 지적을 ‘병’으로 치부된다. 결혼을 하면 해소될 갈등이라는 것이다.

최재순은 “남성의 노예가 되느니보다 차라리 죽어버려. 그것이 그게 네겐 더 행복해 행복해 하하...”라고 살해를 시도하다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보내진다. 영화는 여성 동성애를 여성 히스테리의 결절점으로 삼고, 최재순의 주변에 성실하고 훌륭한 가부장들을 배치함으로써 최재순의 주장을 무화시키킨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다정한 남편인 오빠, 최재순의 ‘병’을 알고도 그녀에게 프로포즈하는 한영기 등은 이상적 남성주체이다. 금이와의 약속을 지키는 김광호 역시 마찬가지이다. 영화는 훌륭한 남성들이 재순을 치료하는 것으로 갈등을 봉합한다. 치료에 성공한 재순이 퇴원하는 날, 오빠를 비롯한 가족들, 한영기와 재회한다. ‘동성애’라는 ‘병’은 치료되고, 정상인으로 돌아온 것이다. 영화는 여성 동성애를 히스테리와 발작, 광기를 연결시키며, 유능한 의사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무능한 가부장이 등장하던 1950년대의 대중서사와는 결을 달리한다. 유능한 오빠의 세계에서 여동생은 이성애자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IV. 나가며

1950년대 한국사회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병역법과 경범법이 가시화된 여장남자를 단속하고, 남성 ‘국민’을 만드는 데 복무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일탈의 가능성 역시 가지고 있었다. 법적 규제와 충돌, 이를 위반하는 일련의 퀴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병역법이나 경범죄법 위반으로 검거된 ‘남성’들은 ‘보통 남자’라는 분할된 감각과 불화한다. 여장을 하고 식모나 여급으로 일하던 여장남자들은 ‘파마’와 화장, 애교 있는 몸짓 등을 통해 여성성을 재현한다. 이들이 수행하는 여성성은 젠더 규범이 자연화한 몸과 젠더의 연결고리를 언제든 탈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민족국가가 목표로 하고 있던 건강한 청년의 이미지에서 일탈한다. 또한 젠더를 바꾸는 행위(트랜스젠더)가 몸과 정신의 불일치에서 생겨나는 고통이나 정신과적 ‘질환’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수행에 따른 것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젠더 규범의 토대에 자리잡고 있는 몸과 정신,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은 해체된다. 퀴어 인구의 불화는 치안을 위반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규제를 외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성별 이분법을 탈구축하며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부터 남성성/들로의 전환을, 젠더 규범으로부터의 재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1950년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젠더 규범의 탈구축은 성적 보수화의 흐름과 만난다. 병역법과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며, 경범죄법 역시 재정비된다. 퀴어한 사람들은 병역법, 경범죄법 등으로 검거된다. 법에 기반한 성적 보수화는 반공 남한이 국민만들기 과정에서 ‘비정상인’을 속아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대중서사에서 재현 양상도 달라진다. 여성국극이 가장 인기 있는 대중예술이던 1950년대 중반까지는 신문연재소설에서 여성 동성애자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이는 여성 동성애를 ‘친한 여자 친구’ 정도의 안전한 개념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나 195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이러한 ‘친밀한 여성 관계’는 이성애 질서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여성 동성애자는 히스테리아이자 범죄자이며, 치료를 통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자가 된다. 이와 같은 전환은 국가 체제의 안정화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공론장의 성적 보수화는 젠더 수행을 코미디 장르로 만든다.

1960년대 흥행에 성공했던 심우섭 감독, 구봉서 주연의 <남자 미용사>(1968), <남자 식모>(1968), <남자 기생>(1969) 시리즈는 남성이 여성 젠더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를 코미디 영화로 재현한다. <남자 기생>의 주인공은 회사에서 뜨개질을 하다가 사장에게 발각되어 해고된다. 남자가 여자들이나 하는

짓을 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후 그는 생계를 위해 요리집 악단에서 일하다 기생이 되어 인기를 끌지만,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기생을 그만둔다. 이때의 여성성 수행은 젠더 허물기와는 다르다. 남성이 여자들의 직업군에서 일하고, 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부끄럽고 웃기는 일로 기록된다.⁴³⁾ 이러한 영화는 병역법 강화와 주민등록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등장한다. 박정희 체제는 병사의 군복무기간을 연장하고, 1968년 주민등록제도를 실시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인구 관리를 본격화한다. 이러한 주민등록제도는 퀴어 장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호적을 정정하는 데 국가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성별을 명시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녀야 하고,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해야 하는 사회에서 젠더 교란은 점차 그 정치적 가능성을 잃어가고, ‘퀴어’가 만들어내는 ‘불화의 정치’ 역시 불가능해졌던 것이다.

43) <남자기생> 시리즈에 대한 분석으로는 Chung-Kang Kim, “Nation, Subculture, and Queer representat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Sexuality*, Vol.24, No.3, September 2015, pp.455-477 참조.

참고문헌

- 권명아,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3.
- 김내성, 『애인』, 삼중당, 1957.
-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 김일란,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 사람생각, 2008.
- 김지혜, “1950년대 여성국극의 공연과 수용의 성별 정치학”, 『한국극예술연구』 30호, 2009.
- _____, “1950년대 여성국극공동체의 동성친밀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6권 1호, 2010.
- 나태중,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과정 연구”, 『군사』 84호, 2012.
- 문승숙(이현정 옮김),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또하나의문화, 2007.
- 박이은실, “퀴어”, 『페미니즘의 개념들』, 동녘, 2015.
- 박정근, “경범죄처벌법해설”, 『법정논총』 15호, 1962.12.
- 이서, “언니 저 달나라로: 백합물과 1910~30년대 동북아시아 여학생 문화”, 『뼈라』 1호, 2012.
- 이임순, “상이군인, 국민만들기”, 『중앙사론』 33호,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1.
- 최정희, 『녹색의 문/속 녹색의 문/끝없는 낭만』, 민중서관, 1976.
- 터울, “50-60년대 언론에 소개된 동성애”, 『친구사이 소식지』 57호, 2015.3.31.
- _____, “50-60년대 언론에 소개된 트랜스젠더, 간성, 남장여자/여장남자”, 『친구사이 소식지』 59호, 2015.5.29.
- _____, “성과학과 우생학-제2의 성과 제3의 성”, 『친구사이 소식지』 69호, 2016.3.17.
- 허윤, “기억의 탈역사화와 사이의 정치학”, 『한국문화연구』 28호, 2015.
- 자크 랑시에르(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 자크 랑시에르(진태원 옮김), 『불화』, 길, 2015.
- 주디스 버틀러(조현준 옮김), 『젠더 허물기』, 문학과지성사, 2015.
- Chung-Kang Kim, “Nation, Subculture, and Queer representation”, *Journal of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24, Number 3, September 2015.

Judith Butler, *Dispossession: The Performative in the Political*, Polity, 2013.

□ 논문접수일: 2016년 4월 4일 심사일: 2016년 4월 19일

게재확정일: 2016년 4월 26일



Abstract

The Contact zone of queer field and legal regulation in 1950's South Korea

Yoon Heo*

This article is aimed to research the relationship of the queer field and the law, especially the minor offenses Law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During the 1950s, Korean traditions and Western modernization were mingling to deconstruct existing patriarchal norms and rebuild the gender landscape. The process of 'trans', women transitioning from the private sphere to the public sphere, coexisted with the parody of masculinity. Such abnormality not only deconstructed gender dichotomy, but also enabled the transition from a single hegemonic masculinity to multiple masculinities and the relocation of gender norms. The drag-king, acting in female *gukgeuk*, emerged against the backdrop of women's rising social status. They were accepted by the general public though confined to a setting available for the coexistence of anxiety and gender disturbance as entertainment.

However, as followed by building up the law, this coexistence had made some troubles. The female impersonators were arrested on misdemeanor charges. Such arrests were Sometimes made under the military service laws. The cold war ideology made this reinforcement possible. The criminalization of queerness, combined with increasing sexual conservatism, was a government project. By articulating the laws, the government intended to create South Korea as a hyper masculine state, a state of war. This intersection of queer and law could provide a rich exploration of the gender in South Korea during the Cold War period.

This social changes made the media less queer-friendly. Lesbian couples, called

* Visiting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S sisters(step sisters), appeared frequently in the 1950's literature. It represented a very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two women. It was not considered queer at all. After the mid-1950s, however, the queer representation became more violent. They were depicted as criminals or killers. It shows the heteronormativity was reinforced by the law and order.

□Key words: queer, transgender, homosexual, the minor offenses Law, the military service law